

의안번호	2204936
의 퇴 인	허종식의원
회 답 일	2024.12.12
추계번호	24B451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58억원(연평균 1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영 의무 (안 제10조의5)	29	15	15	—	—	58	12
국비	14	7	7	—	—	29	6
지방비	14	7	7	—	—	29	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영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5.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유·도선사업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	○	• (추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 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유·도선사업자가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요금 결제·정산에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동 법 제12조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08년 수립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2009~2013」에 따라 시행된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사업의 재정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사업비를 추계함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²⁾ 적용

1)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호~제3호 생략)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6	3.9	3.8	3.8	3.8	3.8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유·도선사업자가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결제·정산에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장비를 설치·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소요비용
- (유사사례) 국토교통부가 2008년 수립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2009~2013」에 따라 시행된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사업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50:50의 지원비율로 재정지원을 시행한 바 있음
 - 동 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원부담 계획을 수립함
 - 지역부문의 경우 전국호환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시설개선 소요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분담
 - 특정부문의 경우 철도, 고속국도의 호환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시설개선 소요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
 - 특정부문의 시외버스의 호환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시설개선 소요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5:5로 분담

[표 2]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 비용추정 항목

구분		내용	비용부담 주체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에 따른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	정부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의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	정부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에 따른 지불단말기 교체개선	민간

구분		내용	비용부담 주체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의 지불단말기 교체개선	민간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에 따른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	민간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의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	민간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에 따른 충전단말기 교체개선	민간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의 충전단말기 교체개선	민간
운영체계 개선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 부문 교통카드 운영업체 운영체계 개선	정부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 교통카드 운영업체 운영체계 개선	정부

자료: 국토교통부(2008),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2009~2013」, p. 43.

- (추계대상) 개정안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유·도선사업자로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설치가 필요한 추계대상은 2024년 기준 여객선 151척, 도선 135척, 여객터미널 28개소, 도선장 29개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은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과 운영체계 개선비용으로 가정함
- (단가) 사업비 단가³⁾는 2009년 당시 지원가격을 2024년 물가기준으로 환산함
- 지불단말기 호환칩 설치비 단가: 88,400원⁴⁾(2009년 단가 65,000원, 소비

3)

[정부지원 비용 추정 결과]

구분	항목		비용(천원)	비고
중앙 정부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부문	1,893,580	(58,264대 × 65,000원)/2
		특정부문	382,525	5,885대 × 65,000원
	운영체계 개선비용	지역호환부문	2,250,000	(9개기관 × 5억원)/2
		특정부문	1,000,000	2개기관 × 5억원
	소 계		5,526,105	—
지방 자치 단체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부문	1,893,580	(58,264대 × 65,000원)/2
		특정부문	90,480	1,392대 × 65,000원
	운영체계 개선비용	지역호환부문	2,250,000	(9개기관 × 5억원)/2
		특정부문	0	—
	소 계		4,234,060	—
총 계			9,760,165	—

자료: 국토교통부(2008),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2009~2013」, p. 43.

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24년 기준으로 환산)

- 지불단말기 설치비용: 대당 250만원(티머니 구입단가 기준)
- 무인발권기 설치비용: 1,500만원(티머니 구입단가 기준)
-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비용: 기관당 6.8억원의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2009년 기준 5억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24년 기준으로 환산)

[표 3] 전국호환 교통카드 여객선 및 도선 등 설치 비용 추계결과: 2024년 기준

항목	비용(천원)	비고
지불단말기 호환칩 설치 ¹⁾	25,208	286대×88,140원
지불단말기 설치 ²⁾	715,000	{여객선(151척) + 도선(135선)} × 2,500천원
무인발권기 ³⁾	3,420,000	{여객선터미널(28개소) + 도선장(29개소)} × 각 4대 × 15,000천원**
운영체계구축 ⁴⁾	1,356,000	2개기관 × 678,000천원*
합계	5,516,208	-

주 1.(호환칩=지불보안응용모듈)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지불거래 발생시 교통카드데이터 처리하는 장치
 2.(운전자 조작기) 노선정보 수신, 운행시작/종료 등 + (AFC 단말기) 교통카드기능 현장 탑승 처리, 검표 등
 3.(무인 발권기) 티켓 발권 키오스크 (신용카드, 현금 등)
 4.예매·발권·정산시스템 개발 및 통합전산망 구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재정부담비율) 2009년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을 참고하여 국비 50%, 지방비 50%로 가정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 사례를 참고하여 3개년간 균분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함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4) 소비자물가지수(2009년 11월, 2024년 11월 기준 적용, 1.356배)
 - 호환칩 설치단가 : 65,000원(2009년)×1.356 = 88,140원(2024년)
 - 운영체계구축단가 : 500,000천원(2009년)×1.356 = 678,000천원(2024년)
 - 지불단말기 및 무인발권기 단가는 티머니가 구입한 비용을 적용하였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추계결과) 이상의 가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8억 5,1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58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불단말기 호환칩 구매비용($A=a \times b$, 백만원)		9	9	9	—	—	27
	물량(a, 대)	95	95	96	—	—	286
	단가(b, 백만원)	0.09	0.09	0.09	—	—	—
지불단말기 설치비용($B=c \times d$, 백만원)		247	252	260	—	—	760
	물량(c, 대)	95	95	96	—	—	286
	단가(d, 백만원)	2.6	2.7	2.7	—	—	—
무인발권기 설치비용($C=e \times f$, 백만원)		1,187	1,211	1,235	—	—	3,633
	물량(e, 대)	76	76	76	—	—	228
	단가(f, 백만원)	16	16	16	—	—	—
시스템 운영체계 설치비용($D=g \times h$, 백만원)		1,416	—	—	—	—	1,416
	물량(g, 대)	2	—	—	—	—	2
	단가(h, 백만원)	708	—	—	—	—	—
합계($E=A+B+C+D$)		2,851	1,463	1,495	—	—	5,809
	국비($E \times 0.5$)	1,425	732	748	—	—	2,905
	지방비($E \times 0.5$)	1,425	732	748	—	—	2,905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